

경남도립남해대학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규정

[시행 2023. 3. 30.] [제2023-13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학점인정)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선행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선행학습경험이란 재학생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을 말한다. <개정 2023. 3. 30.>
- ②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이란 선행학습경험을 평가하여 대학 교과목 이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및 기준) ①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대상은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②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소속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정규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 ③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한다.
- ④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근무경험 등이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⑤ 학과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선행학습경험에 해당하는 학습·연구·실습·근무경험과의 관련성은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4조(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①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에 대해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해당 교과목의 개발·개편을 관장하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로 한다.
2. 위원회는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내용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3.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인정 여부와 인정범위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소속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과는 ①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선행학습경험 평가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선행학

습경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교무처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교무처는 ②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학칙 시행세칙 제16조 및 수업관리 세부규정 제11조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과목의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점인정절차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교무처는 매 학기 개강 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학과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결과적용) 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점 인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학점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3조3항에 따라 졸업학점에 포함
3. 학점 인정된 교과목의 성적은 경력 및 학습경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B+(Pass/Fail 포함)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2022. 7.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22-19호 (2022. 7. 19.)
- 일부개정 제2023-13호 (2022. 3. 30.)